

# 제 안 설 명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# 1. 경 과

가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나.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
- 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  
-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를 제62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
## 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)

-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7. 기타의견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제안설명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4조”를 “제62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.....</p> <p><u>제62조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## 관계법령발췌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